

한눈에 보는 순환자원 관련 제도

활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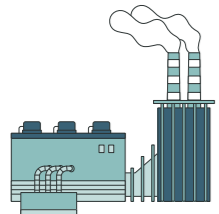
순환자원에 대한
소유권 보유자

순환자원 관련제도 절차

**순환자원
인정**
(유역·지방
환경청 신청)

**순환자원
지정·고시**
(관련 세부
기준 충족)

순환자원 품질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제품제조업체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이 리플렛은 FSC 및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친환경용지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 우편주소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환자원 품질인증 및 사용제품 표시확인 기관)
- 이메일 : cr_mark@keiti.re.kr

✓ 순환자원 품질인증 제출서류

- 품질인증 신청서
-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 지정·고시 등록확인서
- 이물질 및 유해물질 시험분석결과서*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 순환자원의 품질유지 관리 계획서
- 품질인증 받으려는 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출서류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
- 품질인증 받은 순환자원을 10%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
하는 자료

상담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처 제품사후관리실

- 전화: 02-2284-1512/1520
- 이메일 : cr_mark@keiti.re.kr
- ※ 제도 주요내용 및 인증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www.keit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료부터 제품까지”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자원 품질인증제도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



Q&A



순환자원이 무엇인가요?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환자원 품질인증은 무엇인가요?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순환자원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급

생산하는 제품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하고 싶어요!



품질인증 받은 순환자원을 제품당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중량
기준 10% 이상 사용한다고 확인된
제품에는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 품질인증”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 정의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 및 그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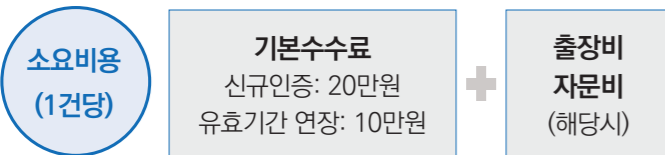
☑ 인증대상

- ① 인정 순환자원
관할 구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
- ② 지정·고시 순환자원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한 품목으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 인증기준

- ① 이물질 함유기준 충족
- ② 유해물질 함유기준 충족
- ③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 수립
*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순환자원 품질인증 소요비용



- * 부가세 별도
- * 자세한 소요비용 기준은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 품질인증 유효기간

- ① 인정 순환자원: 순환자원 인정 종료시 까지
- ② 지정·고시 순환자원: 3년

☑ 품질인증 혜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평가시 우선지원순위 가점(2점)이 부여됩니다.
- ESG 평가지표(환경정보공개 항목 중 환경인증 및 제품생산)로 활용됩니다.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사용업체에 원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 정의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표시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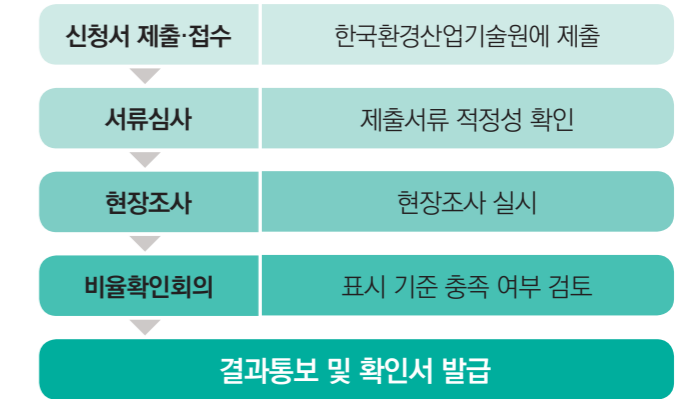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원료의 10% 이상 사용한다고 확인된 제품
* 제품당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중량 기준 10% 이상 품질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 표시방법

“가”형과 “나”형 중 원하는 표시방법을 선택하여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 절차



☑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 비용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 발급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순환자원사용제품 혜택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구매 요청 또는 권유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순환자원 생산 및 순환자원사용제품 생산 관련 녹색분류체계 금융 우대 지원(녹색분류체계 적합프로젝트 해당시)

〈우대금리 지원〉

-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 (우대금리) 대기업·공공기관 0.2%p / 중견·중소기업 1.0%p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 (우대금리) 1차년 중견기업 2%p / 중소기업 3%p
 - * 2·3차년은 1차년 지원액의 50% 내외

〈기타 금융지원〉

- 보증료 감면, 보증비용 상향 여신심사 우대 등
-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21.1.)으로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수단에 적용 중